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3.22(목) 16:00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 이유

-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기능 및 구성(안 제2조, 제3조)

-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,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자문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

나. 위원 임기 및 회의소집(안 제4조, 제7조)

- 임기는 2년(한 차례만 연임 가능), 위원장이 필요한 때 회의 소집
-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다. 위원회 존속기한(안 제12조)

-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'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안 제1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